

2.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절
일반규정**

**제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며,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
- 라. 각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및 그 이행과 관련된 투명성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마.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
- 바. 관련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

- 사. 식품 안전, 동물 건강 및 식물 건강에 대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
- 아. 동물의 건강 개선강과 복지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동물복지의 보호 및 개선에서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다자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 증진하는 것
- 자. 항생제 내성의 발생 및 확산을 줄이고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 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을 다자적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 2. 이 장은 또한 동물복지 및 항생제 내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5.3조

정의

- 1.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장에 언급된 조치 및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을 말한다.

관련 국제기구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제3항에 언급된 기구를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이란 위생 또는 식물위생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 12조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를 말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주관하에 채택된 정의

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주관하에 채택된 정의, 그리고

라.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주관하에 채택된 정의

3. 제2항에 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정의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주관하에 채택된 정의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정의가 우선한다.

제5.4조

권리 및 의무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조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목록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그러한 당국 각각의 역할, 책임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이 장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2절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5.6조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양 당사국은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 구역화(zoning), 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해충 무발생 생산구역과 같은 개념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기 위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이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개념을 적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지역적 조건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따르는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

득할 목적으로 지역적 조건의 인정에 대하여 협력한다. 그렇게 할 때, 양 당사국은 이 분야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지역적 조건의 인정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감사는 제 5.9조에 따라 수행된다.

4.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 또는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 영역의 관련 지역적 조건을 고려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위생 조치의 경우, 수출 당사국이 설정한 질병 안전지역, 질병 발생이 적은 지역, 구역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 및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인정한 관련 공식 질병 지위, 또는

나. 수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식물위생 조치의 경우, 수출 당사국이 설정한 해충 안전지역, 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해충 무발생 생산구역 또는 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

5.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한다.

가. 위생에 대한 지역적 조건의 경우, 관련 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에 기초한 지역적 조건의 근거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나. 식물위생에 대한 지역적 조건의 경우, 관련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기초한 지역적 조건의 근거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6.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를 개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출 당사국의 지역적 조건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7.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지역적 조건 결정을 수용한 경우, 수출 당사국은 그 지역적 조건에 대한 제안된 수정을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 후,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적절한 보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역적 조건 결정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무역의 지속을 허용한다.

8.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특정한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조치를 이행하고 무역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을 과도한 지체 없이 수출 당사국에 알린다.

9. 수출 당사국이 제공한 증거의 평가가 수출 당사국의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에 이르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그 결정의 근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논의를 개최한다.

10.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정이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5.7조

동등성

1. 양 당사국은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개별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제도 전반에 대한 조치의 동등성을 판단할 때, 각 당사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수출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을 인정한다.

4. 수입 당사국은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수출 당사국에 제공한다.

5. 동등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제15.2조(전문 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

런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에 기초한 동등성 인정 절차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8조

수입요건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이 협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게,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수입요건을 수출 당사국의 전 영역에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한다.

2. 자국의 수입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에 규정된 원칙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3. 수입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된 자국의 일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의 완료를 위한 감사 및 필요한 입법 또는 행정 조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관리, 검사, 평가 및 승인 절차가 과도한 지체 없이 실시되고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5. 합리적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수출당사국에 다음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요청의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특정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수입요건. 다만, 그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요청의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출 당사국의 수입요건 설정 또는 수정을 위한 신청의 처리 상황

6. 상품과 관련된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가.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제5.9조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에 합리적인 접근을 부여한다.

7. 수입요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위험평가가 완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위험평가의 결과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8.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하에서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작업장 또는 시설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수립을 검토한다.

9. 제5.13조와 무관하게,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었을 때 수출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의 수입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승인 절차 동안 다른 쪽 당사국에 요구하는 모든 서류, 정보 또는 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한 중복 및 행정적 부담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제5.9조

감사

1. 수출 당사국의 규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규제 관리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¹를 수행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감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한다.

3. 감사의 개시 전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그 개시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목적상, 감사는 서면 평가 및 화상 감사, 원격 감사, 또는 현장 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와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각 당사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5. 각 당사국은 감사 방문의 빈도와 횟수를 제한하도록 노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만 동일한 물품과 관련된 후속 감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감사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6. 수입 당사국은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수출 당사국에 제공한다. 수입 당사국은 감사와 관련하여 자국의 결론을 도출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을 고려한다. 수입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국의 결론을 명시한 서면 보고서를 수출 당사국에 제공한다.

7. 감사의 결과로 취해지는 조치는 확인된 위험에 근거하고, 수입 당사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

8. 각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취득된 비밀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제5.10조

증명

1. 당사국이 수입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수출 증명과 관련하여 추가 지침,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거나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 증명 및 그 밖의 기술의 이행을 촉진한다.

제5.11조

수입 검사

1. 수입 당사국은 수입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위험에 근거하여 수입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최소한의 무역 교란 효과로 수행된다.
2. 수입 검사에서 관련 수입요건의 비준수가 밝혀지는 경우, 수입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연관된 위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고, 수입 당사국이 적절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
3. 수입 당사국은 비준수 탁송물 및 비준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결정에 대한 검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수입 당사국이 수행하는 모든 검토에서, 수입 당사국은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출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검토를 수행한다.
4. 수입 당사국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비준수에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비준수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5.12조

투명성 및 정보 교환

1. 이 조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 가. 무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투명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 나.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 및 수생 동물 질병 목록에 등재된 질병의 존재 여부 또는 그 경과와 같이, 자국 영역의 동물 질병 지위의 중대한 변화

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 및 수생 동물 질병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동물 질병 또는 신종 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적으로 중요한 발견

다. 관련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의 식물 해충의 발생, 발병 또는 확산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 해충 또는 동물 질병 관리, 방제, 또는 박멸 정책이나 관행의 중대한 변화, 또는

마. 양 당사국 간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 안전 문제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음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및 승인 절차의 변경

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다. 양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

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2항 또는 제3항에 언급된 정보가 WTO에 통보되거나 그 관련 규칙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되어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항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최종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공표한 날과 그 조치가 발효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제공한다. 다만, 그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라는 긴급한 문제를 다루도록 의도된 경우거나, 그 조치가 무역 촉진의 성격을 지닌 경우는 제외한다.

제5.13조

긴급조치

1. 당사국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국의 연락처를 통하여 그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한 당사국은 제 5.14조에 따라 기술협의를 참여한다. 양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에 기술협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의 접수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최한다. 긴급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한 당사국은 통보에 대응하여 그리고 기술협의를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기술협의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교란을 피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양 당사국은 조치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택사항 또는 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선택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한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한 자국의 목적 및 취지를 제공한다.

4. 긴급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채택되는 시점에 양 당사국 간 탁송물이 운송 중인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탁송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수출 당사국이 신속하게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제5.14조

기술협약

1.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안, 또는 그 이행이 이 장과 불합치한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연락처를 통하여 기술협약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술협약은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협약은 전자적 수단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모든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3. 이러한 기술협약의 목적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약의 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에 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대하는 데 있다.
4. 양 당사국이 우려를 다루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메커니즘 외의 메커니즘을 이미 수립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제3절

동물복지 및 항생제 내성

제5.15조

동물복지

1. 양 당사국은 동물이 지각 있는 존재²임을 인정하고 동물의 사육에는 동물의 안녕에 대한 책임이 수반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동물 건강의 개선, 동물복지의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간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동물복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자국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² 각 당사국 각각의 동물복지 법과 규정에 정의된 대로이다.

이 분야에서의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채택, 유지 또는 수정하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동물복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서로의 접근방식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한다.

나.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복지 기준의 이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다. 동물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대한 기준의 개발에 대하여 관련 국제포럼에서 협력한다. 그리고

라. 동물복지 기준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포럼에서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동물복지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동물복지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대표 1인이 공동작업반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작업반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보고한다. 공동작업반은 이 조에 따라 협력의 장 역할을 한다.

5. 공동작업반은 다음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이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

나. 동물복지에서의 진전사항 검토

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관행 촉진

라. 이 조에 따른 정보 공유,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그 밖의 기능 수행

6. 공동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대로, 필요 시 회합한다. 공동작업반은 전자적 수단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회합할 수 있다.

제5.16조

항생제 내성

1. 양 당사국은 항생제 내성이 긴급한 문제이자 인간 및 동물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전 지구적 위협임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무역, 동물 건강, 인간 건강, 식물 건강 및 환경 간의 상호의존성과 식품 안전 및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며, 항생제 내성의 성격상 세계보건기구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초국가적 접근 및 원 헬스(One Health)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식량 생산을 위한 동물의 사육에서 수의학 용도의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감소, 그리고

나. 동물에 대한 성장촉진제로서의 항생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금지

3. 각 당사국은 동물 사육에서 항생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국가행동계획 및 전략을 수행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항생제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범, 지침, 기준, 권고 및 그 밖의 이니셔티브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기구(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및 유엔식량농업기구를 포함한다)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 지침, 기준, 권고 및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항생제 내성 감시 및 자료 수집의 전 세계적 조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6.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항생제 내성 방지 분야의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이 분야에서의 공동 견해, 이해관계, 우선순위 및 정책을 확인한다.

제4절 제도 규정

제5.17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 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의 확인, 우선순위 설정, 논의 및 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다.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장벽의 제거를 원활히 한다.
 - 라. 이 장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개발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권고한다.
 - 마. 양국의 작업에 대한 양 당사국 간 논의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한다. 그리고
 - 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 가. 이 장과 관련된 협력 활동의 확대를 위한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나. 이 장과 관련된 양자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검토 중인 신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또는 검토 중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이나 변경에 대한 제안을 초기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
-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대한 양 당사국 간 이해 제고를 원활히 하고, 적절한 경우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를 포함한 다자 간 포럼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마. 각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할 수 있다.
- 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 또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전문가급 대표로 구성되는 기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 사. 동물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
- 아.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문제 또는 사안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검토한다.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전자적 수단으로 회합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회기 외 기간에는 서신으로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6.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당사국은 제5.5조에 따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회의를 조정하기 위한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7.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언제든지 그 절차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8.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상호 동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한다.

제5.18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